

제339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7. 1. 9 ~ 1. 13)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 339회 정례회

(2017. 1. 9 ~ 1. 13)

제339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가 열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양계업 종사자와 지금 이 시각에도 AI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방역업무 종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혼란은 물론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상식과 원칙이 모두 무너지는 허탈한 현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희망의 시대 새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와 의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서 역할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도내 사정은 무척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졸업과 동시에 무직자로 전락하는 청년실업문제 등 도민들의 찌푸린 눈살이 퍼질 기미도 없이 올해도 추락하는 전북경제에 답이 없다는 암울한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활성화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살림살이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도민들의 바람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송하진 지사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3대 혁신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도민의 지갑을 채우는 알찬 성장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셔서 도민들이 고향에서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 역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무주세계태권도대회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올해가 전북 대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협치의 자세로 힘껏 돕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은 신뢰가 기본이며 진정한 사회개혁도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공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사회정의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대학 부정 입학을 보면서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노력과 재능에 따라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력과 돈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도내에도 교육비리가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주시고 모든 학생이 부모의 권력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평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긴급 지원했던 전북도청과 법정전출금 상계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전북도청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나아가 도민들입니다. 교육문제는 정부나 전북교육청 또는 전라북도만의 몫이 아닙니다. 따라서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도내 각 교육주체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그리고 전북도청 등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개최되는 임시회는 2017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시책방향 청취와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각종 안전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구하는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공유하며 머리를 맞댄다면 살맛나는 전북을 향한 1년간의 여정이 보람되고 즐거울 것이라 믿습니다.

서로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책무에 충실해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황 현

목 차

제339회 정례회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2. 회기 및 운영
3. 의 사 일 정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3. 위원회별 처리현황
4. 주요 처리사례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I .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7. 1. 4(수)
- 집회 일자 : 2017. 1. 9(월) 14:00
- 집회 사유
 - 2017년도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 시책방향 청취
 -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석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7. 1. 9 ~ 1. 13(5일간, 2016년 : 5일, 총누계 414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3(연누계 : 30, 총 누계 76)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34회 임사회	6	1	1	1	1	1	1	
2017 년도	6	1	1	1	1	1	1	
총 누 계	698	50	146	97	110	118	131	46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1. 9(월)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1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주영은 의원, 장명식 의원, 최인정 의원, 이도영 의원, 이해숙 의원 최영규 의원, 강용구 의원 1. 제33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4.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5. 담배값 인하 촉구 결의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13(금)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2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현숙 의원, 최영일 의원, 최인정 의원 1.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5.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안 7.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9.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전라북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16.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산 건전성 기준 적용 개선 촉구 결의안 17.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영위원회	1. 9(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안전 심사 -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자치위원회	1. 9(월) 17: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안전 심사 - 전라북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복지위원회	1. 9(월) 16: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안전 심사 -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안 	
농산업경제위원회	1. 9(월) 16: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안전 심사 -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 10(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안전 심사 -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현지 의정활동 -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교육위원회	11. 11(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전주자립학교 ○ 일반안전 심사 -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 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교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39회 (2017. 1. 13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18	14	7	7						4		
	누 계	975	551	237	314	10	11	1	227		35	109	41
의 회	소계	금회	13	9	6	3						4	
		누계	506	340	207	133		11	1	6		109	39
	의원	금회	13	9	6	3						4	
		누계	463	350	207	133		10		3		97	13
	위원회	금회	3										3
		누계	43					1	1	3		12	26
도지사	금 회	3	3	1	2								
	누 계	354	162	26	129	7			172		19		
교육감	금 회	2	2		2								
	누 계	115	49	4	42	3			49		16	1	

2. 처리현황

○ 총 괄

제339회 (2017. 1. 13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18	18	15	2				1	1	
	누계	975	852	801	125		14		12	23	
조 례 안	소계	금회	14	13	11	2					1
		누계	551	529	421	101		2		5	21
	의회	금회	9	9	7	2					
		누계	340	317	256	61				4	18
	도지사	금회	3	2	2						1
		누계	162	160	123	35		1		1	2
교육감	금회	2	2	2							
	누계	49	48	42	5		1			1	
규 칙 안	금회										
	누계	11	10	10					1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누계	227	226	207	6		9		4	1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누계	35	35	16	17		2		1		
건의결의안	금회	4	5	4					1		
	누계	109	108	105	1		1		1	1	
기 타 의 안	금회	3	3	3							
	누계	41	41	41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18	14				4			18	15	2		1	1	
	누계	838	545	11	1	222		21	17	3	814	676	109	15	12	23
운 영 위 원 회	금회	3	1					2		3	2			1		
	누계	49	31	11	1				6		44	40	1	1	2	5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금회	2	2							2	2					
	누계	165	119			33			2	1	163	141	21	1		2
환 경 지 복 위 원 회	금회	2	2							2	1	1				
	누계	119	99			17			3		115	94	18	1	2	4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금회	2	2							1	1					1
	누계	140	68			69			3		135	113	14	7	1	5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금회	1	1							1	1	1				
	누계	154	96			54			4		152	128	22		3	2
교 육 위 원 회	금회	6	6							6	6					
	누계	173	122			49		1		1	166	142	17	3	4	7
특 별 위 원 회	금회															
	누계	36						34	1	1	36	18	16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3						3		3	3					
	누계	137	1			6		95	37	137	134	2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18	14					4		18	15	2		1	1	
	누계	975	551			227		35	109	41	975	848	125	14	12	23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기관 및 의안별<접수>

제339회 (2017. 1. 13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975	551	237	314	10	11	1	227		35	109	41
의 회	소 계	506	340	207	133		11	1	6		109	39
	의 원	463	350	207	133		10		3		97	13
	위 원 회	43					1	1	3		12	26
전라북도지사	354	162	26	129	7			172		19		
전라북도교육감	115	49	4	42	3			49		16		1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39회 (2017. 1. 13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975	852	801	125		14		12	23	
조 례 안	소 계	551	529	421	101		2		5	21
	의 회	340	317	256	61				4	18
	도 지 사	162	160	123	35		1		1	2
	교 육 감	49	48	42	5		1			1
규 칙 안	11	10	10					1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227	226	207	6		9		4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35	35	16	17		2		1		
건 의 결 의 안	109	108	105	1		1		1		
기 타 의 안	41	41	41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출 자	박재만 의원 외 14인		제 출 일 자	2016. 12.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 4
	의 결 일 자	2016. 1. 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6		이 송 기 관	도의회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전라북도
- 나. 사무범위 : 2011. 4월 체결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및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체결된 새만금 관련 투자협약
- 다. 활동기간 : 2017. 1. 16 ~ 7. 15(6개월)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2.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 4
	의 결 일 자	2017. 1. 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유족의 범위를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유족의 범위를 준용, 손자녀와 조부모를 추가·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발생시 공무원 재해기준으로 준용하였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통합 개정('16.7.28)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음
- 또한 법적 근거없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별지서식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범위를 손자녀, 조부모 추가
- 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 출 자	장학수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6. 12.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 화 건 설 안 전 위 원 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6. 1. 10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 1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6. 1. 1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와 도내 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함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 나. 전라북도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및 전라북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12.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 4
	의 결 일 자	2016. 1. 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1.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1. 1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및 불필요한 정보 보유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서식을 개인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 나.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노사정’ 을 ‘노사민정’ 으로 위원회 명칭 수정 (안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 다. 대상자 결정 시기를 12월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 (안 제17조제2항)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12.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1. 4
	의 결 일 자	2017. 1.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6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 심의 결과 개선 권고에 따라 업무의 최적화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한 조례 내용 정비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12.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 4
	의 결 일 자	2017. 1.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6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도립학교 중 신설 및 폐지, 위치 변경, 명칭 변경된 학교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도립학교 중 신설, 폐지, 위치 변경, 명칭 변경된 학교에 대하여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삭제·변경함

전라북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제 출 자	허남주·김재중·이도영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12.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 4
	의 결 일 자	2017. 1. 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육성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나. 미래전략과제 발굴 시행 기관과 지원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5조~제6조)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도영 의원 외 17인		제 출 일 자	2016. 12.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 4
	의 결 일 자	2017. 1. 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2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전라북도민을 보호하고 ‘금연권장구역’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강화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도입함.

□ 주요내용

- 가. 조례명 개정
- 나. 금연홍보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임 (안 제2조)
- 다. 금연정책 등 공고 (안 제5조)
- 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 및 지정방법 (안 제7조 ~ 안 제8조)
- 마. 흡연실의 설치 (안 제10조)
- 바. 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안 제11조)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 12.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 4
	의 결 일 자	2017. 1. 9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13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2조)
- 나. 모성보호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모성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제5조)
- 마. 모자보건 및 난임극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와 제7조)
- 사. 임신부의 날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와 제10조)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안 대한 수정안〉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부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최인정·이해숙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6. 12.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 4
	의 결 일 자	2017. 1.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6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학교의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 가. 안전도우미회의 설치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나 .안전도우미회의 명칭과 기능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안전도우미회의 재정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전라북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해숙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6. 12.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 4
	의 결 일 자	201. 1.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6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와 사업 계획 사항 등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나. 작은 학교 지원 사업과 방법, 교직원 배치, 우대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8조)
- 다. 학생 전입 확대 방안 사항을 정함(안 제 9조)
- 라. 작은 학교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최인장강병잔최영일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6. 12. 3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 4
	의 결 일 자	2017. 1.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난독증 지원 관련부서의 유기적 협조 및 지속적 지원 토대 마련
- 난독증 학생 선별 및 지원에 따른 법률적 토대위에 현실적 지원체제 구축

□ 주요내용

- 가.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난독증 및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정의, 난독증 증상에 대한 규정(제1조~3조)
- 나. 전라북도 내 초·중등학생 중 난독증 학생 실태파악 및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과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지원 진단조사 실시에 대한 규정(제4조~제7조)
- 다.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및 지원대책 등의 자문을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지원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제8조~제12조)
- 라. 난독증 학생을 위한 상담지원, 중재교육, 전문치료기관 연계, 난독증 전문단체 위탁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운영에 대한 규정(제13조~제14조)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최인정·장명작·최영규·최영일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6. 12.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 4
	의 결 일 자	2017. 1. 11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13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6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보존·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교육청 정책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교육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3조 (교육감의 책무)
 -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책실명제의 정착 및 활성화에 노력
- 나. 제4조~제6조(정책실명제의 운영 및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 책임관 지정, 중점관리대상 선정
- 다. 제7조~제11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사항
- 라. 제12조~제14조(정책실명제 관리 및 평가)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과 중점관리사업 추진상황 공개, 추진평가, 평가에 따른 조치 등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도영·송지용·정진세·박재완·강용구·이해숙·정호운·최영규·최영일·허남주 의원		제 출 일 자	2016. 12.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 4
	의 결 일 자	2017. 1. 9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6		이 송 기 관	전라북도의회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도민의 인권증진과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인권센터 설치와 실국명칭변경(기획관리실→기획조정실)을 담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공포(2017. 1. 2)
- 이에 신설되는 인권센터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업무관련성이 높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사항(기획관리실→기획조정실)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신설되는 인권센터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 회로 정함(안 제29조 제2항 제2호 가목)
- 나.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 변경 (안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담배값 인하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이호근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7. 1. 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0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2,500원이던 담배값을 2015년부터 4,500원으로 대폭 인상, 제세 부담금은 1갑당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무려 114%가 인상되었음
- 더불어 민주당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17억9천만갑으로 2015년도 13억1천만갑보다 36.6%나 폭증했고, 상반기 담배 세수도 전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난 5조9,347억원으로 전망했으며, 또한 2016년 담배 반출량이 4십억갑으로 담배세수도 사상 최고치인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정부가 흡연을 억제한다며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지난 5월부터는 외산담배를 군부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국산담배값 인상으로 외산담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증세는 물론 외산담배업자에 담배시장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담배값 인상이 건강증진 효과는 없고, 서민 증세 효과와 외산담배의 시장 점유율만 높였기 때문에 담배값을 다시 인하할 것을 촉구함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제 출 자	장학수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7. 1.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6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국가 및 지역정체성 확립과 공공환경의 실현이라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와 광역 및 시군이 각각 수립하는 법정계획의 연계성 및 통합성이 중요함
-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성은 명시하고 있는 반면, 광역계획과 시군계획의 연계성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정계획의 충돌염려와 실효성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역계획”을 수립하되, “시군구계획”은 “국가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광역계획”은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국가 및 광역계획에 따라 수립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함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산 건전성 기준 적용 개선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7. 1.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 16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경영왜곡과 조합원 피해, 건전한 대출자에 대한 불합리한 신용하락과 대출금 회수 등의 부당한 조치가 가해진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처분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 금액이 소액인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주의’ 판정을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요주의’ 판정에 따른 대손충당금도 현실성을 고려해 10%보다는 훨씬 낮은 비율로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 상호금융권은 농,수,신협과 새마을 금고 등 3,600여 금융기관에서 전국 1,800여 만 명의 서민과 농어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건전성 기준의 개선으로 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관련 기준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야별

(2017. 1. 1 ~ 2017. 1. 13)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	환경	산업 경제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 통	도시 계획	건 설	건 축	기 타
금 회	1								1					
2017년 누 계	1								1					

○ 제출자별

구분	계	인 원 별					기관단체
		소 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 회	1	1			1		
2017년 누 계	1	1			1		

2. 처리현황

구분	계	처 리 별					처리중
		소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금 회	1	1	1				
2017년 누 계	1	1	1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0대)

(2014. 7. 1 ~ 2017. 1. 13)

구분	위원회별	접수	처리상황				비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69	69	69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7	7	7			
	환경복지위원회	18	18	18			
	산업경제위원회	8	8	8			
	문화관광건설위원회	23	23	23			
	교육위원회	7	7	7			
	기 타	6	6	6			
금회	소 계	1	1	1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	1	1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기 타						
누계	소 계	70	70	70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7	7	7			
	환경복지위원회	18	18	18			
	산업경제위원회	9	9	9			
	문화관광건설위원회	23	23	23			
	교육위원회	7	7	7			
	기 타	6	6	6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7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7. 1. 1 ~ 2017. 1. 13)

기관별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12	12		100
누 계		12	12		100	
도	금 회	11	11		100	
	누 계	11	11		100	
교육청	금 회	1	1			
	누 계	1	1		100	

2. 2017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7. 1. 1 ~ 2017. 1. 13)

기관별	구 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지	산 업 경 제	문화관 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12	0	3	1	1	3	4
누 계		12	0	3	1	1	3	4	0
도	금 회	11	0	3	1	1	3	3	0
	누 계	11	0	3	1	1	3	3	0
교육청	금 회	1	0	0	0	0	0	1	0
	누 계	1	0	0	0	0	0	1	0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횡수별)

(2014. 7. 1 ~ 2017. 1. 13)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786	1786		
전라북도	1355	1355		
교 육 청	431	431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횡수별)

(2014. 7. 1 ~ 2017. 1. 13)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1786	439	253	194	316	554	17	13
전라북도	1355	402	234	183	294	229	8	5
교 육 청	431	37	19	11	22	325	9	8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7. 1. 13)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6044	1772	623	812	875	1616	183	163
전라북도	4973	1678	583	778	797	991	82	64
교 육 청	1071	94	40	34	78	625	101	99